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10. 2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91호로 2021년 10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1.12.23.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 및 당연직 위원 일부삭제(안 제12조)
- 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
- 다. 정보공개 수수료 일부개정(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1. 9. 9. ~ 9. 29. / 20일 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2항의 위원 구성을 기존 7명(당연직 4명, 위촉직 3명)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제5항에 외부 전문가 위촉직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음. 다만,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늘린 「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 23일로, 부칙에 안 제12조제5항의 시행일을 이에 맞추도록 하였음.
-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와 위촉직 위원의 임기, 해촉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3 수수료를 개정한 것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 또한 시행일이 2021년 12월 23일로 상위 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우리 구의 정보공개수수료를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적기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참 고 자 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1.12.23. 시행예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1. 12. 23.]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2.23. 시행예정]

별표 전자파일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10. 22.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90호로 2021년 10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통장 미위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 연임 및
모집기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위기가정 발굴
등 대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여 지역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통장 연임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조)
- 나. 통장 모집기준 확대 및 조문 체계 정비(안 제5조)
- 다.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규정 정비(안 제5조의2)
- 라. 통장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급 규정 신설(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고
- 다. 입법예고(2021. 9. 9. ~ 9. 29./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연임 및 모집기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 위기가정 발굴 등 대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에게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조례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 언론보도¹⁾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행정업무를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통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자가 없어 일부지역의 통장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어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는 통·반 설치조례에 따라 주민 중 통장을 위촉하고 있으며 통장의 임무는 주민등록 또는 전입사실 확인 등 거주실태 조사,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등 통장의 감독을 받아 각종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나 공석이 길어지면 행정공백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주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임을 폐지하거나 늘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1) 7개월제, 통장 하겠다고 나서지 않아요(2021.4.29. 인천일보)

‘통장’ 구인난... “업무량 느는데 채우는 갈수록 열악(2020.10.19. 울산매일신문)

“통장 모시기 어렵네”.. 성남시, 통장 임기 제한 폐지 추진(2019. 8. 15. 연합뉴스)

다세대 밀집지역 “통장 하실 분 없나요?”(2018.1.23. 서울경제)

-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통장 연임 횟수를 늘리고 통장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 들어가는 복지업무에 따른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를 신설하는 등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기존 통·반 관련 제도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4조는 통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임기 3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하던 것을 제2항을 신설하여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일반적으로 연임제한 이유는 특정 주민이 통장을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자격 있는 모든 주민에게 통장이 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여 능력 있고 적합한 통장을 위촉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우리 구 조례의 통장 임기는 당초 2년 임기에 연임 무제한에서 2001. 1. 9. 2년 임기에 1회 연임 제한으로 개정하였다가, 2005. 5. 25. 3년 임기에 1회 연임 제한으로 개정한 바 있음.
- 안 제5조는 통장의 위촉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해당 통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주민에서 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지 3년이 경과한 사람”까지 확대하고 단서조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통장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곳은 주로 주택, 원룸, 오피스텔 밀집 지역으로 임차인 위주로 거주하는 행태이다 보니 장기거주자가 적어 지역 실정에 밝은 자영업자까지 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사업자등록 후 3년의 기간이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사업자등록자를 통장으로 위촉 후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이전할 경우 대상자의 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에 제5조제4항 위촉 해제 사유 중에 호를 신설하여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통장이 해당 관할구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를 규정할 것을 제안함.

- 안 제11조는 통·반장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과 비교하여 통장의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를 신설하였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제7조제1항 통장의 임무 중 제3호에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으로 복지업무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신설임무가 아닌 본연의 임무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비용 추계에 따르면 통장 1인당 월 2만원 지급할 경우 통장 정원 583명을 대입하면 매년 1억 3,99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서울시 25개구 중 12개구에서 월 1만원 ~ 2만원의 복지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 구별 복지업무수당 지급 현황>

월지급액	지급구	자치구명
1만원	8개구	광진, 강북, 노원, 서대문, 양천, 강서, 금천, 송파
2만원	4개구	성동, 도봉, 은평, 관악
미지급	13개구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에 대한 임기와 위촉 기준을 완화하고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신설하여 통장 공석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통장의 임무와 자격사항 등 검토 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략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